

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4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년 6월 일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「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」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3조 “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” 내용 삭제
- 제4조 “위원회의 기능” 내용 삭제
- 제5조 “위원회의 구성” 내용 삭제
- 제6조 “위원장의 직무” 내용 삭제
- 제7조 “위원의 임기” 내용 삭제
- 제8조 “위원의 해촉” 내용 삭제
- 제9조 “회의 및 수당” 내용을 삭제함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: 불 입(친환경농업육성법, 동법시행령)

- 첨 부
1. 의안전문 1부.
 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 3. 관계법령 1부.
 4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)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수립,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2.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 3.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.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, 토양개량제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.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.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진 및 판로대책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.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<삭 제></p>
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한다.</p> <p>③위원은 친환경농업 관련업무 및 학계 전문가,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, 소비자 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농업축산과장, 기술지원과장,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7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8조(위원의 해촉) ①위원장은 위원이 사임,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9조(회의 및 수당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
[관련법령]

친환경농업육성법

[일부개정 2009.4.1 법률 제9623호]

제8조(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) 삭제 <2009.4.1>

친환경농업육성법

[시행 2008.2.29]

제8조 (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<개정 2001.1.26>) ①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
3.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
4.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
5.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

[시행 2009.9.15] [대통령령 제21730호, 2009.9.15, 일부개정]

제2조(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) 삭제 <2009.9.15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삭제 <2009.9.15>

제4조(회의) 삭제 <2009.9.15>

제5조 (분과위원회) 삭제 <2009.9.15>

제6조 (간사) 삭제 <2009.9.15>

제7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 삭제 <2009.9.15>

제8조 (수당) 삭제 <2009.9.15>

제9조 (운영세칙) 삭제 <2009.9.15>

제천시 공고 제 2010 - 513 호

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0. 4. 8.

제 천 시 장

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 례 명 :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「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」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(제3조) : 삭제
- 위원회의 기능(제4조) : 삭제
- 위원회의 구성(제5조) : 삭제
- 위원장의 직무(제6조) : 삭제
- 위원의 임기(제7조) : 삭제
- 위원의 해촉(제8조) : 삭제
- 회의 및 수당(제9조) : 삭제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9년4 월 30 일 까지 제천시장(참조 농업축산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310, FAX 641 - 5319, 담당자 : 641 - 5314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지방농업주 사보	친환경농업팀 장				

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10-513호
3. 공고기간 : 2010. 4. 8 ~ 4. 30(22일)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6. 공고결과
 - 조회수 : 21명
 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임 공고안 1부(별지). 끝.